

울산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1033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동현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훈

변론 종결2024. 7. 17.

판결 선고2024.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양산시 D에 위치한 E 골프장에 관하여 2022. 1. 5. 체결된 비품 및 영업권양수도계약을 131,276,236원 및 그 중 115,740,500원에 대하여 2022. 1. 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276,236원 및 그 중 115,740,500원에 대하여 2022. 1. 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 11. 3.경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67959호로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C는 2017. 12. 5.경 이 법원 2017가단19455호 투자금반환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9. 12. 11. 원고의 본소청구 및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20나10114호(본소), 2020나10121호(반소)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12. 14.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C는 원고에게 115,740,500원 및 그 중 1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1.부터, 나머지 96,240,5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5.부터 각 2021.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 및 C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22다201679), 2022. 4. 28.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비품 및 영업권 양수도계약

1) C는 2022. 1. 5.경 피고와 사이에, C가 운영하는 양산시 D, 1층 소재 E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비품 및 영업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비품 및 권리금은 C와 피고가 합의하여 35,000,000원으로 정함.
2. 피고는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C는 이를 정히 영수함.
3. 피고는 잔금 25,000,000원을 동년 1월 10일자에 지불하기로 하고, C는 건물주와 피고 간에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시켜 주고, 비품 전부도 인계인수를 끝내기로 함.

단, C는 피고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과 차임 1,000,000원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선임대차계약1) 을 체결하였다.

- 비품 목록 -

1	영업허가권	11	커피 자판기 1점(임대임)
2	스크린장비세트 3대(임대임)	12	공기청정기 1점(임대임)
3	전화 1대()	13	비대 1점(임대임)
4	TV 1대	14	소화기 4점
5	수납장 17점	15	간판일체
6	카드기 1점	16	원탁 1점
7	냉장고 1점	17	의자 2점
8	에어컨(스탠드1, 벽1, 천정2)	18	
9	전자랜지 1점	19	
10	자외선 살균기 1점	20	

위 표시 비품 외 계약일 현재 비치된 비품 일체를 포함한다.

※ 상기 비품내역에 있는 스크린장비세트 3대의 판매가격은 60,000,000원으로 매매하기로 한다(현재 리스 이용중임).

2)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C에게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2. 1. 10.경 이 사건 골프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E골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C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재산관계

C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비품 및 영업권 외에 양산시 G 임야 4860㎡ 중 일부 지분[원고가 주장하는 C의 160/4,860 지분 가액은 2022년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면 380,800원(= 2,380원 × 160㎡)이다], H은행의 예금 998,840원, I은행의 예금 16,624원, J의 해지환급금 562,060원, K의 해지환급금 34,377원, L의 해지환급금 2,433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M카드에 대하여 7,519,917원, N카드에 대하여 4,790,131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5,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산시,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I은행, H은행, O, M카드, L, K, J, N카드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양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권 등을 현저히 낮은 금액에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골프장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 약 2년간 계속 운영되었고, 피고가 2024. 1. 14. 별도로 소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새롭게 리스 대출채무를 부담한 이상, 위 양수도계약 이후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C에게 회복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므로, 위 양수도계약은 위 골프장의 자산 가액 237,481,000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2022. 1. 5. 기준 채권원리금 합계 131,276,236원 및 그 중 원금 115,740,500원에 대하여 2022. 1. 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피보전채권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Q의 소개로 C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정상적인 거래로 양도받았을 뿐 C의 재산상황이나 원고와의 채무관계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피고에게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골프장의 비품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8, 9, 11 내지 1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이 법원의 P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C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는 위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위 양수도계약이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C는 2021. 12. 23.경 이 사건 골프장의 손님으로 알게 된 Q에게 위 골프장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Q은 위 골프장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피고에게 소개하였다. 피고는 Q의 위와 같은 소개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C와 친인척 등의 특별한 인적관계나 거래관계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C의

재산상태나 채권·채무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없다. 원고는, C가 피고를 "이모야"라고 부르는 등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의 재산상황 등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피고가 Q 또는 C를 통해서 C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Q 또는 C가 피고에게 C의 재산상황 등을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③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 50,000,000원(비품 및 권리금 35,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현실적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는 "스크린장비세트 3대의 판매가격은 60,000,000원으로 매매하기로 한다(현재 리스 이용중임)"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2022. 1. 14.경 P와 사이에 스크린골프기기 3대(당초 C가 리스한 것이다)에 관하여 구입금액 60,000,000원(신용공여금액), 리스기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료 월 2,080,000원으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P은, 위 60,000,000원 중 31,540,008원은 C의 P에 대한 중도상환채무의 변제로 처리하고, 나머지 28,459,992원은 C 및 피고의 요청에 따라 C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양수도대금이 위 60,000,000원을 합한 110,000,000원(= 50,000,000원 + 60,000,000원) 이상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거나 위 스크린장비세트 관련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양수도계약서(을 제1호증)만을 제출한 것은 선의의 수익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60,000,000원은 위 스크린골프기기의 리스관계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C에서 피고로 승계(형식은 피고가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었다)되는 과정에서 C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의 수수 없이 P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유형자산의 재산적 가치가 135,873,400원, 무형자산(영업권)의 재산적 가치가 34,176,000원, R ID의 재산적 가치가 45,000,000원, 영업이익이 22,431,000원으로 재산가치의 총액이 237,481,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2018. 4. 24. 기준 이 사건 골프장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재산적 가치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으나, 그 이후인 2018. 12. 12. 기준으로는 유형자산의 재산적 가치는 118,840,800원, 무형자산의 재산적 가치는

8,852,200원으로 감소된 점, ㉔ 더욱이 위 유형자산에는 스크린골프기기 3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골프기기는 C가 2020. 10. 30.경 P로부터 리스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에는 C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원고는, 리스기간 중 영업양도 등으로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납부 금액 만큼의 리스료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P에 대한 2024. 4. 16.자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2)), 위 R ID(엄밀히는 '락키')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 당시 위 골프기기의 종물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 점, ㉕ 위 영업이익 22,431,000원은 이 사건 골프장 자체의 자산에 포함될 수 없는 점, ㉖ 더욱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위 기준일인 2018. 12. 12.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22. 1. 5.경에 체결되었으므로 감가상각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게 비품 및 권리금(스크린골프기기 3대 제외)으로 지급한 35,000,000원은 시가에 비하여 다소 낮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㉗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바, 설령 피고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지인인 Q을 통하여 C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거래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 등 C의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박정홍

1) 피고는 2021. 12. 1.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

2) 리스계약 해지 당시의 리스물건 가액이 잔존 리스료 지급채무 합계액보다 높은 경우에 그 차액 상당은 리스계약자의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